

#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의자<br>및 발의일자 | 2011년 10월 24일, 조평호 의원 등 1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정일자          |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<br>(2012년 4월 17일 상정, 의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심사결과          | 원안가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요 제정내용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여주농업고등학교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<br/>설치 규정(안 제2조)</li></ul> |

**교육위원회**

# **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**

## **심 사 보 고 서**

2012년 4월 일  
교육위원회

### **1. 심사경과**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2011년 10월 24일 , 조평호 의원 등 13명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2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 
(2012년 4월 17일 상정, 검토보고, 질의/답변, 토론 후 의결)

### **2. 제안설명의 요지**

(제안설명 :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)

#### **가. 제정이유**

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등에 의하여 설치된 “학교”가 아님에도, “학교”의 설치를 규정한 「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가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단기산업교육시설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여주농업고등학교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를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4번지로 규정함(안 제3조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(교육전문위원 : 서남철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-----[별첨 1]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첨부서류

가. 제정 조례안

#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

교육전문위원 : 서 남 철

## 1. 제정이유

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등에 의하여 설치된 “학교”가 아님에도, “학교”의 설치를 규정한 「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단기산업교육시설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여주농업고등학교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4번지로 규정함(안 제3조)

### 3. 검토의견

-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1994년 7월 20일 대통령 직속 농촌발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「산업교육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주 자영농업고에 1996년 특별과정으로 설치되었음.
-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설립 근거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3조에 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 운영조항과 별표 2 단기산업교육시설 소재지 및 명칭으로 하였음. 그러나, 전문학교의 성격상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넣는 것이 부적합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부칙에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부칙개정을 명시하였음. 조례 개정 이후 관련 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.
-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첨단과학영농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함. 현재 원예, 동물자원 등 2개 계열에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음. 채소경영, 과수경영, 화훼경영은 원예 계열이고, 낙농한우경영, 양돈양계경영, 축산식품경영은 동물자원 계열임.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학교운영비를 충당하였으나, 2005년부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.

## □ 관련법령

### 「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」

[시행 2011. 8. 8] [경기도조례 제4236호, 2011. 8. 8, 일부개정]

**제3조**(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운영) 도립학교 중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학교에 부설·운영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소재지·명칭은 별표 2와 같고,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07.1.8. 조3583>

#### 단기산업교육시설 소재지 및 명칭(제3조 관련)

| 소재지   | 명칭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여 주 군 |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 |

### 「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」

[시행 2011. 8. 8] [경기도교육규칙 제627호, 2011. 8. 8, 전부개정]

**제2조**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병설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조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라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2. "부설학교"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
 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1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
  - 나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

##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2. 1.26] [법률 제10907호, 2011. 7.25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7.25>

1. "산업교육"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2. "산업교육기관"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.
  - 가.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 - 나.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
  - 다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**제6조(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##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11. 7.19] [대통령령 제23036호, 2011. 7.19, 타법개정]

**제5조(단기 산업교육시설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.

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.

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,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·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및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.29, 2003.9.19, 2008.1.31, 2008.2.29>

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·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. <개정 2001.1.29, 2008.2.29>

[전문개정 1997.2.6]

경기도 조례 제 호

##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단기산업교육시설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운영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를 설치한다.

제3조(소재지)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4번지에 둔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는 삭제한다.

별표 2를 삭제하고, 별표 1을 별표로 한다.